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인치·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- 「형사소송법」(법률 제16924호, 2021. 1. 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검사가 체포영장의 인치·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96조의3의 규정을 구속영장의 인치·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 구에 준용함(안 제100조제3항 신설)
- O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진정성 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(안

제134조의2제1항·제2항·제6항)

3.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4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·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.

제134조의2제1항 중 "피고인이 된 피의자"를 "피고인이 아닌 피의자"로 하고, "피고인이"를 "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"로 하고, "피고인"을 "자신"으로 한다.

제13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34조의4제1항 중 "피고인"을 "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"으로 한다. 제13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0조(준용규정) ①·② (생 략) | 제100조(준용규정) ①·②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 |
| | <u>장의 인치·구금할 장소의 변경</u> |
| | <u>청구에 준용한다.</u> |
| 제134조의2(영상녹화물의 조사 신 | 제134조의2(영상녹화물의 조사 신 |
| 청) ① 검사는 <u>피고인이 된 피</u> | 청) ① <u>피고인이 아닌</u> |
| <u>의자</u> 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 | <u>피의자</u> |
| 에서 <u>피고인이</u> 그 조서에 기재 | <u>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</u> |
| 된 내용이 <u>피고인</u> 이 진술한 내 | <u>자신</u> |
| 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| |
|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 | |
| 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| |
|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 | |
| 청할 수 있다. | |
| ②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| <u><삭 제></u> |
|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| |
|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 | |
| <u>다.</u> | |
| 1.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| |
| 시간과 조사 장소 | |
| 2.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 | |
| 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이 | |
|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 | |

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

- ③ ~ ⑤ (생 략)
- 6 제1항, 제3항부터 제5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
제134조의4(영상녹화물의 조사) 저 ①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<u>피고인</u>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 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 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 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피고 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자도 제1항과 같은 의견을 진술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 략)

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 <삭 제>

| ∥134조의4(영상녹화물의 | 조사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| |
| | |
| 원진(| <u> 술자와</u> |
| 함께 피고인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<u><삭 제></u> | |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| 법원행정처 사법 | 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락처 | (02) 3480 - 1930 |